

GRAPH DESIGN CONTENTS



GRAPH DESIGN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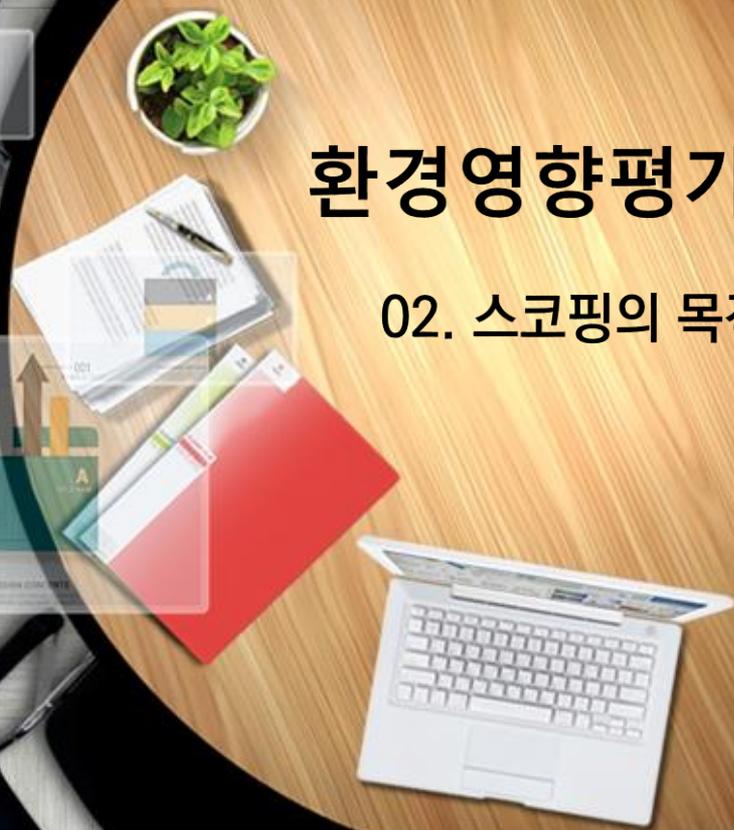
GRAPH DESIGN CONTENTS



GRAPH DESIGN CONTENTS

환경영향평가스코핑

02. 스코핑의 목적 및 참여자



▶ 스코핑의 정의 및 목적

➤ 스코핑(Scoping)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마다 정의가 다름

우리나라

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 범위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단계 또는 절차**

목적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함

▶ 스코핑의 정의 및 목적

미국

정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논의되어질 **환경이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개 과정”으로 정의

목적

- ①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
- ② 환경 이슈의 중요도와 범위를 결정
- ③ 심각하지 않은 이슈를 파악하고 제외시킴
- ④ 기관 간 업무의 할당 및 배분
- ⑤ 준비되어져야 할 관련 환경문서의 파악
- ⑥ 타 환경성검토와 자문요구를 파악

▶ 스코핑의 정의 및 목적

캐나다

정의

환경영향평가

- 고려되어야 할 요소, 대안, 잠재적인 영향 결정
- 전달되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
- 적절한 경계를 설정
- 노력의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

항상 훈련되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음

▶ 스코핑의 정의 및 목적

캐나다

절차

정보 수집

공간적/시간적 범위
확인

이슈리스트 개발

중요 생태계 요소 (Valued Ecosystem
Components, VECs) 확인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이슈 전달을 위한
전략 개발

전략 증명 및
이해관계자 권고



▶ 스코핑의 정의 및 목적

일본



시민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평가방법으로 결정

지역의 환경적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수집, 평가내용을 선택할 때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고려)

(ex) 도로 건설의 경우: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서의 도로
건설과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도로 건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다름

▶ 우리나라 스코핑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협의회)에서 이루어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

▶ 스코핑의 내용

우리나라 스코핑 단계에서는 당해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 1 어떠한 항목을 평가할 것인지
- 2 평가항목별로 어떤 세부내용을 다룰 것인지
- 3 항목별, 세부내용별로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 4 평가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 5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 6 약식평가를 해도 될 것인지 등을 결정

▶ 스코핑 참여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참여자

광의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기관

협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간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협의회 개요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구성 목적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함(법 제8조)

▶ 협의회 개요

구성 목적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개요

구성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계획 면적이 6만 m²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협의회 구성
제외 가능(시행령 제8조)

협의회의 성격

비 상설조직, 자문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까지

▶ 협의회 구성방법

구성 주체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운영

구성 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입안·수립 및 승인 등의 전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때

▶ 협의회 구성방법

구성 기준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기본원칙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최적 환경성 검토 방법을 자문·결정하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 협의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환경단체 포함),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

위원장

-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과장급이상)을 지명

▶ 협의회 구성방법

구성 기준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위원

- 관계 행정기관: 위원장, 입안·승인 등 담당부서 공무원, 환경부서 공무원 등 2~3인(산하기관 소속직원 포함 가능)
- 협의기관: 협의기관 공무원,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임의) 등 1~2인

-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유역(지방)환경청이 하는 경우, 협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 포함
- 대안·검토항목 부적정에 따른 협의단계 보완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기관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

▶ 협의회의 구성방법

구성 기준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위원

➤ 관계전문가: 자연·생활환경,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환경평가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내외

- 관계행정기관은 행정계획·환경평가 관련 전문가 3인 내외, 협의기관은 대학교수,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 KETI 직원 등 3인 내외 추천
- 개발계획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토기관인 KETI 직원 추천

▶ 협의회 역할 및 위원의 의무

협회의 역할

역 할

- ▶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할 대안의 종류, 중점 검토 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검토 방법 등을 심의, 결정
- ▶ 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협의회 역할 및 위원의 의무

평가 항목 결정 시 고려사항

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의 합리성·객관성·신뢰성·효율성 제고,
평가서 작성기간 및 비용 절감, 협의기간 단축

전략환경영향평가

1. 해당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환경영향평가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

▶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총괄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요청 가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대행 가능

▶ 위원의 의무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외부에 누설·제공·이용해서는 아니 됨

위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해야 함

▶ 협의회 운영방법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원칙

위원장이 회의 소집,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서면
심의

아래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환경적 영향이 경미하거나 위원 간 검토의견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 제한적으로 실시

▶ 협의회 운영방법

회의자료의 작성 및 제출

[작성주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

협의회 심의기간

30일(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

▶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법 제11조, 법 제24조, 시행령 제10조, 제33조)

공개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영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기본계획도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대상 계획 및 사업별 협의회 자료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항 목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계획의 목적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2. 계획의 개요	계획의 추진 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을 제시한다. 계획의 규모와 입지, 계획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 대상 계획 및 사업별 협의회 자료 작성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항 목	기 재 사 항	작 성 방 법
II. 대상지역 설정
III. 토지이용 구상안		
IV. 지역개황		
V. 대안의 설정		
VI. 평가항목 범위 등의 설정		
	1. 평가항목 설정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VII.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대상 계획 및 사업별 협의회 자료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항 목	기 재 사 항	작 성 방 법
I. 사업의 개요
II.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III. 지역개황		
IV.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설정		
V. 평가항목 및 범위 등 설정		
VI.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VII.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